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중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중전의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서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중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도록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가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기술과 내국인이 투자한 시설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다. 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 확대(안 제4조)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개발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6.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촉위원 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3항제2호 중 “신성장·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1호 중 “내국인이 지출하는”을 “내국인의”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9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을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성장 ·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u> <u>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 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 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9제1 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같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 는 신성장 · 원천기술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u> <u><신 설></u>	<u>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u> <u>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 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 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 ·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 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u>

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생략)

2.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

--

④ ----- 위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

⑤ -----
----- 위촉위원-----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

1. 내국인의 -----

-----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2. -----

--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

3.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u>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촉위원 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u>
<u>제5조</u> (생략) <u>제6조</u>(회의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u>제4조제1항</u>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제7조</u> (생략)	<u>제7조</u> (현행 제5조와 같음) <u>제8조</u>(회의 결과의 통지) ----- -- <u>제5조제1항</u> ----- ----- ----- -----. <u>제9조</u> (현행 제7조와 같음)